

「2026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」 참여자 모집 공고

경기도는 공공성이 큰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중장기적 발전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「2026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」의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2. 19.

경기도지사

1. 사업개요

- 사업내용 :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공동체 활성화, 공유·협업 기반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매입자금 융자 지원

목적사업	사업내용 예시
공동체 활성화 사업	육아, 교육, 의료, 돌봄, 주거, 문화, 생활환경,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활동
공유사업	공간, 물건, 재능,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·경제적·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
협업사업	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공동구매, 공동판매, 공유공간 조성 등을 통해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활동

- 사업기간 : 2026.2.19.(목) ~ 10.30.(금) (단,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)
- 총사업비 : 30억원
- 추진방법 : 신청 → 경기도 서류 검토 → 융자은행 여신 심사 → 융자결정·실행
 - ※ 융자은행의 여신심사에 의해 융자 가부 및 금액이 결정되므로 신청한 지원금보다 지원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, 지원금이 축소되나 동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자금 부담 비용이 확대됨을 유의
 - ※ 신청서류 접수 전 융자은행(신한은행 수원역지점 ☎ 031-253-7875)에 금융상담 필수 권고
- 융자은행 : 신한은행(수원역지점 ☎ 031-253-7875)

2. 지원조건

○ 융자한도 : 개소당 최대 10억 원 이내

- 매매계약서상 매입자금 최대 90% 이내(은행 대출 상담 후 한도 확정)

- 본 지원 한도는 개소당 최대 지원 한도이며 기업체별 신용등급 및 담보현황에 따라 대출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금융기관과 사전 협의 필수이며 신설 기업은 대출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.
- 부동산담보 대출비율은 경기변동에 따라 수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최근 부동산시장 감안시 집합상가 및 아파트형공장(지식산업센터 포함)은 공실율/부도를 높아 보수적 운용 합니다.
(집합상가 : 경기도 소재 집합상가인 경우는 감정금액의 50~60% 수준이며, 경기 광주시는 30~40% 수준임)
(아파트형 공장 : 경기도 소재 아파트형공장은 감정금액의 60~70% 수준이며, 경기 이천시 45~50% 수준임)

- 컨소시엄은 신청업체 융자금액 합산

○ 융자금리 : 2.0% 고정금리

○ 융자기간 : 10년(4년거치 6년균분) 또는 15년(5년거치 10년 균분) 중 선택

○ 자금용도 :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, 기계기구/설비 매입

부동산	○ 건축법 시행령 별표1 '용도별 건축물의 종류'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용도 기재된 제1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, 업무시설, 공장, 창고시설 및 "도"가 인정하는 건축물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공부와 현황이 동일해야 함. ○ <u>단순 토지 매입, 건물의 신/증설 등 건축은 제외</u>
기계기구 /설비	○ 기업의 운영을 위해 신규 매입하는 <u>기계기구/설비</u>로서 보증기관 보증서 및 해당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○ 공장저당법에 의해 토지,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기구에 대해 <u>일괄로</u> 담보취득이 가능한 기계기구/설비

○ 융자조건

- 융자 후 자산매각, 기업부도·폐업,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,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상실 등 발생 시 융자회수

3. 지원대상(신청자격)

○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경기도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(법인) 또는 해당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

1.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 제2조에 따른 **사회적기업**
2.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 제2조에 따른 **마을기업**
3.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 제2조에 따른 **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**
4.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 제2조에 따른 **소비자생활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,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**
5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**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**
6.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 제2조에 따른 **예비사회적기업, 예비마을기업, 자활기업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의10(소셜벤처기업) 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은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 가능**
 ※ 사회적기업이면서 예비사회적기업, 예비마을기업, 소셜벤처기업, 자활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의 지위로 신청

○ 제외대상 : 공고일 기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매매계약한 사업자
 - ※ **2026년 1월 1일 체결된 매매계약부터 가능하며 신규융자 신청만 가능**(2025년 12월 31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불가함), **매입대금을 완납했거나 대환의 경우는 불가**
-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사치향락 관련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
 - ※ 유흥·향락업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, 담배 중개업, 주류도매업, 성인용품 판매점, 일반 유흥주점 등(공고문 [별표1] 참고)
- 휴·폐업중인 사업자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
- 국세, 지방세(도세·시군세)를 체납 중인 사업자(징수유예는 체납의 범위에서 제외 가능)
- 정책지원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
-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외 자금으로 신청한 경우
- 「경기도 부동산 상가 매입비」 자금으로 기 융자를 받은 경우
- ※ 컨소시엄 참여인 경우 **구성원 중 1개 기업이라도 기 융자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**
-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및 「2026년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」에 따라 **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에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이 확인될 경우**
 단 법 위반 사실이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(이미 치유가 완료된 행위 또는 치유 예정 행위)에 해당하는 경우 「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(공고문 서식4-4)」 제출 시 미적용
- 융자취급 지침 부동산 임대 시 처리기준(공고문 [별표2])에 따라 융자환수 대상인 경우
- 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

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기준 적용법률(11개)

- ①공정거래법 ②하도급법 ③표시광고법 ④근로기준법 ⑤산업안전보건법 ⑥폐기물관리법
 ⑦대기환경보전법 ⑧소음진동관리법 ⑨물환경보전법 ⑩국세기본법 ⑪지방세기본법

4. 추진절차

절 차	내 용
① 사업 신청서류 접수 (기업 → 경기도)	· 접수기간 : '26.2.19.(목) ~10.30.(금) 단,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· 접수처/방법 : 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 / 이메일(dlvttotm@gg.go.kr)
↓	
② 1차 서류 검토 (경기도)	· 주요내용 : 지원타당성 및 공공성 등 검토로 용자추천대상 결정 * 매월 말일까지 접수분 1차 서류 검토 후, 익월 둘째주 은행 용자 추천대상자 통보 예정
↓	
③ 용자결정 신청서류 접수 (기업 → 용자은행)	· 신청대상 : 용자추천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· 제출서류 : 용자은행 여신규정에 따름(<붙임 2> 참조)
↓	
④ 2차 심사 (용자은행)	· 심사주체 : 신한은행 수원역지점(담보설정 등) · 심사방법 :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용자검토 및 현장실사 등 · 주요내용 : 용자 가부 및 용자 금액 결정
↓	
⑤ 용자지급신청 (기업 → 용자은행)	· 신청대상 : 2차 심사를 통해 용자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 · 신청기관 :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※ 담보권 설정, 신용보증서 제출 등 채권보전조치 필요 · 신청기한 : 2026년 11월 30일(월)까지
↓	
⑥ 용자실행(용자은행 → 기업)	·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→ 용자지급 신청기업

5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< ①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신청서류 접수 >

- 접수기간 : 2026.2.19.(목) ~ 10.30.(금) 단,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
 - ※ 신청서류 접수 전 용자은행(신한은행 수원역지점 ☎ 031-253-7875)에 금융상담 필수 권고
- 접수방법 :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
 - ※ 전자우편 주소 : dlvtotm@gg.go.kr
 - 2026.10.30.(금) 18시 발송분까지 유효하며 전자우편 발송 후 사업담당자에게 전화 확인 필수 (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 Tel. 031-8008-3421)
- 제출서류 : <붙임 1> 경기도 서류제출 목록
 - 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 제출 (파일명 : 기업명.pdf)

< ② 용자결정 신청서류 접수 >

- 신청대상 : 용자신청대상자로 선정된 기업
- 접수기관 : 신한은행 수원역지점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
- 제출서류 : 신한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름(<붙임 2> 참조)
 - ※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경기도 신청 서류 은행에 통보 예정

6. 기타 유의사항

- 매매계약서 상 매입자금의 10%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하며,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·등록세, 중개수수료, 인테리어 비용 등은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 소요비용의 자기자금을 마련해야 함
- 공모와 관련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,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 - 용자은행의 여신 심사에 의해 용자 가부 및 금액이 결정되므로 신청한 지원금 보다 지원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, 지원금이 축소되나 동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자금 부담 비용이 확대됨을 유의
 - 용자은행의 여신 심사 시 담보 이외 기타사항은 각자 보증기관 등 상담을 통해 조달하여야 함
- ※ 경기도 신청서류 접수 전 용자은행(신한은행 수원역지점)에 금융상담 필수 권고
-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,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간 경기도 전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
- ※ 사업자 선정 전후 및 용자실행 후에도 법 위반기업 적발 시 용자신청 취소 및 용자금 회수
- 부동산(주택) 구입 자금의 경우, ‘은행업감독규정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’ 및 ‘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’ 등의 기준을 따름
- 심사 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하며, 심사 결과와 관련한 평가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

◆ 사업 신청 문의 : 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 (☎ 031-8008-3421)

◆ 용자 신청/상담 :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(☎ 031-253-7875, 253-7852)

(경기도) 서류제출 목록

제 출 서 류	비고
1-1. 「2026년 협동자산화 지원사업」 용자신청서	
1-2. 법인소개서	
1-3. 컨소시엄 현황	
2.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용자 동의서	
3.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	
4-1.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활용 동의서	
4-2.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
4-3. 기업의 범위반 사실(부존재)여부 약약서	
4-4. 기업의 범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	해당시
5. 대표자 본인 신분증 사본	
6. 사업자등록증(혹은 고유번호증) 사본 1부.	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
7.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.	
8. 정관 사본 1부.	
9. 재무제표(3개년) 1부.	
10.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 각 1부.	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
11. 사회적경제조직 증빙 서류(지정·인증·인가·신고확인증 등) 사본 1부.	
12. 부동산(장비등) 매매(임대)계약서 사본 1부. - 부동산 매매계약은 공신력 있는 기관·법원·공공기관·공인중개사 등을 통한 계약만 인정 ※ 단,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인 경우, 매매계약 가능 확인서(물건지 주소, 금액, 건축물 용도, 연면적 등 표기, 공인중개사 확인 必)를 사전 제출한 뒤 선정 심사 후 매매계약서 제출 가능	
13. 부동산(장비등) 견적서 1부.	
14.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	필요시
15. 경기도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유의사항 확인서	

① 제출 시 서류제출 목록 순서대로 PDF 1개 파일(○○기업.pdf)로 제출

② (은행) 제출 필요시 일부 서류 복사 사용 가능

※ 유의사항

1. (공통) 서명 및 날인은 기업 대표 명의로 진행하며, 서명·날인 누락 시 접수 불가
2. (컨소시엄) 모든 참여 기업이 (제출서류 4-1 ~ 11, 15)을 각각 제출
3. (제출서류 1 ~ 4, 15) 지정된 신청 서식으로만 작성하며, 그 외 서식을 사용하면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4. (제출서류 6 ~ 7)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
5. (제출서류 10)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
6. (1-1번~15번) 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PDF파일(기업명.pdf)로 제출

※ 제출 서류의 내용은 서류 검토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므로,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

(신한은행) 융자결정신청 서류제출 목록

※ 융자추천대상 기업 중 융자결정신청 희망기업

구 분	내 용
대출 약정을 위한 필수서류	- 정관사본,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 - 법인등기부등본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 - 법인인감증명서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 - 차입 관련 이사회 의사록(주주총회 의사록) - 기타 개별기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
기업 심사 서류	- 재무제표(최근 3개년) - 사업계획서 - 대표자 이력서 - 임직원 명부, 유급근로자 명부 - 매출액 확인 자료 -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원 - 금융거래확인서 - 기타 개별기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
기타 서류	-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- 기타 개별기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

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응자 지원 제외 업종

업 종	해 당 업 종
제조업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주류, 담배 중개업
	골동품, 귀금속 중개업
	잎담배 도매업
	주류, 담배 도매업
	모피제품 도매업 (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)
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	성인용품 판매점
음식점 및 주점업	일반(무도)유흥 주점업
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	경마, 경륜,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	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, 게임아바타중개업
금융 및 보험업	금융 및 보험업
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전문서비스업	기획부동산업*
사업지원 서비스업	홍신소
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경주장 운영업
	골프장 운영업
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	무도장 운영업
개인 서비스업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	점집, 무당, 심령 술집 등
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
* (운영형태)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(330㎡, 660㎡등)로 분할한 후,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(전화권유 판매)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(시세의 3~5배)에 매도하는 업종

부동산 임대 시 처리기준

※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동산 임대의 경우

1 일부를 임대하였을 경우

□ 무상과 유상 임대차계약을 제출받아 내용 확인

○ 매입상가 건축물 연면적 대비 임대해준 면적 비율이 “기업자부담”비율 초과 시 융자금환수

※ 기업자부담비율 = $1 - [\text{도자금 융자잔액} \div \text{융자매입시설가액}(\text{융자시점기준, VAT제외})]$

☞ 기업이 원금을 상환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도 자금 차지비중이 감소되는 만큼 해당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여력 인정

☞ 처리기준일자는 기업 소멸기간까지이고 해당 기간 내 “기업자부담 비율”을 준수할 경우 지원 유지

환수처리 예시

(예시) 부동산매입 10억원인 상가 (총연면적 1,000㎡)를 위해 8억원을 지원해 준 기업이 해당 상가 부분임대(임대면적 210㎡) 주고 있는 경우 (남아있는 도자금 대출잔액 8억원)

☞ 기업자 부담 비율 (20%) = $1 - [\text{도자금 융자잔액 } 8\text{억원} \div \text{매입가액 } 10\text{억원}]$

☞ 부분임대 비율 (21%) = $\text{임대면적 } 210\text{㎡} \div \text{건축물 총연면적 } 1,000\text{㎡}$

⇒ (결과) 부분 임대비율 21%로 기업자 부담비율 20% 초과한바 환수 처리

2 전부 임대하였을 경우

□ 무상 및 유상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융자금 환수

☞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, 해당 시설을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되지 않음에 따라 융자금 환수

3 기 타

□ 단, 협동조합(연합회)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임대 시 제외

☞ 조합원 및 회원은 소속 사회적경제기업회원으로 3년 경과자에 한해서 가능

※ 시설/장비는 임대 불가